

2022년 근흥면

정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2022. 11.

2022년 「근흥면 정기 종합감사」 결과

I 감사 개요

- 감사 실시기간 : 2022. 9. 27.(화) ~ 9. 30.(금) (4일간)
- 감사범위 : 2020. 9. ~ 2022. 8. 기간 중 근흥면 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기획예산담당관 등 6명(감사팀)
- 감사중점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계약) 예정가격 작성여부, 업체 선정의 적정, 감독·검사 및 대가지급 적정
 - (공사) 설계 및 시공의 적정
 - (물품) 시설물 및 물품 관리
 - (민원) 대민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 소극행정¹⁾ 분야 등
 - (복무) 출장·초과근무·연가 등 복무 전반,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관리

[근흥면 기본현황]

- 조직 및 구성 : 4팀 정원17, 현원16 * 공무원 4
- 예산규모 : 4,105백만 원 * 배정 1,088, 재배정 3,017
- 시설물 현황 : 청사(지하1층 42.57㎡, 1층 387.77㎡, 2층 307.32㎡)

II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행정상					재정상			
계	시정	주의	권고	현지처분	계	회수	추징	환급
20	5	12	-	3	6	3	2	1

1) 소극행정 : 공직자가 ①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②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거나 ③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한 경우(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시 취득목적 확인 소홀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농지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상한(세대원 총소유면적 1,000㎡)이내인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또한, 신청당시의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첨부하여야 하며,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 그럼에도, 근흥면에서는 김○○이 근흥면 △△리 ○○○○-○번지 외 1필지 □□□m²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취득목적은 주말·체험영농으로 표기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흥면에 제출하였으나,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세대원의 농업경영 능력과 소유농지의 이용현황이 작성되어있어 세대원 포함하여 농지 1,000m²이상 소유한 자임이 충분히 확인·조사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전체의 농지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주말체험영농 또는 농업경영 등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에 대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잘못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요건의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적정 등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첨부서류 확인 소홀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는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는 2022. 5. 18. 신설됨.
- 그럼에도, 근흥면에서는 20△△.△.△△.~○.○○. 기간 중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완 요청하거나 반려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총 □건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말체험 영농목적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금 대상조사 및 지급 부적정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원)
【내 용】

-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이며, 다만, 같은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따르면 읍·면장은 기본직접지불금등록 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해야한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조사할 때에는 농가에서 착오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근흥면에서는 ‘20□□년도·20○○년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하면서 농지전용한 ◎필지를 잘못 조사·입력하여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익직접지불금 대상 사실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과다하게 지급한 ‘20□□년도·20○○년도 공익직접지불금’ △△△,△△△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농지전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직접지불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사후관리점검 미이행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 제 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2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시설 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원된 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정과정에서는 읍·면에 매년 농기계지원사업계획을 알리면서 사업 완료시 지원 농기계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근흥면에서는 20△△. ~ 20○○. □월 기간동안 지원된 농기계 △△△대에 대하여 매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급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상황을 관리대장에 기록·점검하여야 함에도 해당기간 공급된 농기계는 수감대상기간(2020. 9. ~ 2022. 8.) 동안에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2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농기계 중 미점검 농기계에 대하여 일체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채용절차 미준수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 훈령 제1483호, '21. 2. 18.)에 의거 환경산림과는 매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통보하고 태안군 산불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모집공고를 실시함에 따라 읍·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모집공고 및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산불감시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근흥면에서는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채용 시 20△△년 가을철과 20○○년 봄철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채용공고하여 모집하면서 체력검정 절차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앞으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운영 자체계획 수립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산불감시원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사용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되 관리부서(행정지원과)와 반드시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근로계약)에서는 사용부서는 채용예정근로자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에서 1부, 근로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근흥면에 대한 자체감사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점검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하지 않은 사업이 ◇◇건,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하면서 실제사역기간보다 늦게 사역결의를 하여 적게는 △일부터 많게는 ○○일까지 사역시기를 일실한 사업이 ◎◎건, 사업 추진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서 부적정한 사업이 □□건으로 기간제 채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장애인 복지카드 회수 소홀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그리고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에서는 군수는 장애인 등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 통보)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0조(과태료)에서는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증 반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근흥면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김○○ 외 △인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도 송달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환 급(△△천원), 추 징(□천원)
【내 용】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가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5,000원)를 징수할 수 있다.
- 다만,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자연적 훼손, 성명·생년월일 등 변경, 변경내용란 부족,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 어려운 경우 등은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수수료 무료’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및 제18조(수수료의 면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로 ‘수수료 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근흥면에서는 20△△년~20○○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면제 대상자임에도 수수료를 부과(△건)하고,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분에 대하여 환급 및 추징조치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재발급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공사 관련 문서접수 소홀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의 규정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종이문서(비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하고, 접수인을 활용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종이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제1항에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착공신고서, 각종 계획서, 준공 설계도서 등)를 확인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근흥면에서는 ‘□□△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건에 대하여 시공자가 제출하는 재착공계 및 착공계, 준공계를 접수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관련 문서 접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앞으로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활용하여 접수하는 등 공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도로점용 기간연장 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고,
-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따르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 방법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에 따르면 법 제6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근흥면에서는 △건의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건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로점용자에 대한 허가취소나 원상회복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만료기간이 지난 후 도로점용자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따라 연장 처리하는 등 도로점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앞으로 「도로법」 제61조 및 제73조, 「도로법시행령」 제54조를 준수하여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기허가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만료검사) 미 실시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근흥면에서는 20○○년 만료검사 □□건, 20◎◎년 만료검사 ●건, 20◇◇년 만료검사 ■■건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담보책임 만료건에 대한 건설공사 하자검사(만료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앞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도급계약에 대하여 내부 계획 수립 후 정기 하자검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내 용】

-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말한다. 같은 법률 제8조(독촉)에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재·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별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독촉장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근흥면에서는 당해연도(현년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을 통하여 과년도 이월 최소화를 위한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책임보험과태료 □건, 총△△△,△△△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미발송으로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미발송된 독촉장을 즉시발송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책임보험과태료 징수 등 세외수입 업무 추진시, 앞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시 적기에 독촉장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제 목】**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및 통장이자 세입조치 미이행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원)
【내 용】

- 「지방재정법」 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²⁾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읍·면의 경우 부·읍면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근흥면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및 기관카드계좌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근흥면 자체감사기간(2020. 9 ~ 2022. 8.)동안 기관카드 계좌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 및 이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적립액(20△△년) □건, 〇〇〇,〇〇〇원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발생액(20△△년) ▲건, 〇,〇〇〇원이 근흥면 기관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해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1.1.1.시행]으로 법령 개편

회계년도 이후 세입조치 한 사실이 있고, 신용카드 결제계좌 발생 이자발생액(20○○년) ●건, △△△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기관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 이자발생액 △,△△△원에 대하여 즉시 세입 조치한 후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발생액 및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추 징(△,△△△원)

【내 용】

- 「지방세법」 제23조의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동법 제35조 제1항에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5조 제2항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38조에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흥면에서는 ○○신고 허가사항에 대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없이 신고(허가)증을 교부하여 신고분 등록면허세를 누락하게 하였고, 이후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매년 부과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대장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면허세(면허) □건, △,△△△원을 누락하는 등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 등 ○○신고 허가사항에 대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 후 신고(허가)증을 교부하여 지방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당직근무 규정 준수 소홀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태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근흥면 감사기간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무인경비시스템 청사 경비내역 및 당직근무표를 점검한 결과, 일직 근무자는 정상근무일 근무시간에 준하여 휴일 당직근무를 해야 함에도 총 ○회에 걸쳐 9시 이후 출근하거나 18시 또는 21시 이전에 퇴근하는 등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앞으로 당직근무자가 「태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근무 시간을 엄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가족돌봄휴가(유·무급) 사용 승인 부적정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내 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제 10항에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녀 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근흥면에서는 20○○년 유·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승인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증빙자료 첨부 등 맞는 조치를 취해주시고, 앞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특근급식비 중복 지급

【소 관 부 서】 근흥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천원)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인당 1식 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되어있으며,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근흥면에서는 20□□~20○○년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집행하였음에도, 20□□년 ■~●월과 20○○년 ◎월 시간 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급식비 ●●천원을 이중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더하여, 20□□년 △월 ◇명에게 동일일자에 대형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근흥면장은 과다하게 지급한 급식비 △△천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비상 및 시간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복하는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